

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3. 23.(금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
관한 건 - (2012-14-046)

○ 제9차 전체회의('12.2.22)에 이어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통신
발전기금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
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책정하고, 분담금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
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책정(안 별표)

- 신규 분담금 징수대상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(IPTV사업자), 종합
편성·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을 0%로 책정하고,
- 분담금 납부 유예중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(DMB사업자)에 대한
분담금 면제방법을 징수율 '0%'로 하여 표현을 통일

② 지상파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 신설(안 부칙 제2조)

- (분담금 분납)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3년도까지 분담금을 1억원이 초과되는
경우 1/2씩 2회에 걸쳐 분납
- (납부시기) 납부 고지 후 1회차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1개월 이내에, 2회차에
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납부

③ 적용시점(안 부칙 제1조) 및 재검토 기한 1년 연장(안 본칙 제9조)

- (분담금 적용시점)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2년도 방송광고 매출액부터, 그 외
사업자는 2011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, 방송광고 매출액,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
영업이익부터 분담금 산정에 적용
- (재검토 기한) 2013. 12. 31로 되어 있는 본 고시에 대한 일몰·연장 여부 검토
기한을 법제처 일몰조항 규정방법에 맞게 2014. 12. 31로 수정하고, 관련조문을
부칙에서 본칙으로 이전

○ 보완사항

-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사업자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
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'12년 중 마련
-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 및 비율을 확대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
방안도 포함하여 추진

- 향후 방송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따른 과도한 이익금 배당에 대해서는 차기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시 감안하여 반영 추진

○ 향후일정

- 고시 개정안 발령(관보게재) : '12. 3월중

나. 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」 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14-061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, 신설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원선임 절차,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」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(안 제2조)

- 설립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가 되고, 설립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됨

② 임원추천위원회 임무 (안 제3조)

- 임원후보자를 모집, 심사하고 최종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(기획재정부)에 추천

③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(안 제4조)

-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④ 지원자 모집 (안 제6조)

-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 결정

·공개모집 :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되,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공고

⑤ 임원 응모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 (안 제7조)

-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, 비전과 중장기발전전략 수행의지 및 역량,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

⑥ 심사절차 및 방법 (안 제8조)

-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실시. 단, 비상임이사의 경우 면접심사 생략 가능

⑦ 후보자 추천 (안 제9조)

- 최종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(기획재정부)에 추천

다. (주)와이티엔의 'YTN 24' 재심에 관한 건 - (2012-14-062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YTN 24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1.12.28)에 대한 (주)와이티엔의 재심 청구('12.1.25) 건에 대하여,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'시청자에 대한 사과'를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【 원심 주요내용('11.12.28) 】

- 프로그램 : (주)와이티엔의 'YTN 24' (2011.10.3, 23:00-23:40 방송)
 - 제재조치 : 시청자에 대한 사과 (정보전달 조항 위반)
 - 위반내용 : ○ '벤츠, 콧대 낮추고 영업 총력전!' 아이템에서 수입차 벤츠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내용을 보도하면서,
 - ① 앵커 뒷배경의 크로마키(일명 '어깨걸이') 화면으로 'The new E-Class를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, 선택 1. 무이자 36개월, 선택 2. 유예할부 월 399,000원, 문의전화: 02-550-4000'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벤츠자동차 모습을 여과없이 노출하고
 - ② 기자가 '36개월 무이자 할부나 월 30만원대의 유예할부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'라고 언급하는 한편, 서울 강남의 벤츠 매장 외벽에 걸린 '무이자 36개월, 유예할부 월 399,000원, 문의전화: 02-550-4000'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과없이 노출하는 장면과,
 - ③ 동 보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, 기자가 "지난달부터 최고급 등급인 S-Class에 까지 무이자 할부를 확대해 본격적인 영업전에 뛰어들었다"고 운운하는 한편, 벤츠 매장 외벽에 걸린 '한성자동차 강남 전시장, 특별 심야 상담 및 시승이벤트, 금요일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운영, 문의전화 02-513-3400'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과없이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
-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47조(정보전달)제1항을 위반하였음

라. 한국방송공사의 'VJ 특공대' 재심에 관한 건 - (2012-14-063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VJ 특공대' 맛집소개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'12.1.16)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('12.2.1) 건에 대하여,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'주의'를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【 원심 주요내용('12.1.16) 】

- 프로그램 : KBS-2TV 'VJ 특공대' (2009.8.14(금), 21:55-23:05)
 - 제재조치 : 주의 (객관성 조항 위반)
 - 위반내용 : ○ 전국 각지의 맛집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,
 - 방송당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음식인 '대판 어묵탕'을 소개하면서 ▲음식점 사장이 "저희는 철판 전문점이라 철판도 100개 정도 되고요, 큰 철판은 (길이가) 80cm되고 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"라고 말하는 내용, ▲동 음식을 먹은 후 손님들이 "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너무 맛있어요"라고 말하는 내용 등 해당 메뉴가 마치 이전부터 계속 판매되어 온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
-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객관성)를 위반함

7] 보고사항

가.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-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치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계획(안)을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① 평가위원회 개요

㉠ 법적 지위

- 방송법 제3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소관 직무 사항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

㉡ 직 무 (시행령 제22조)

- ▶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▶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▶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㉢ 평가위원회 구성 (법 제35조의5 및 시행령 제22조)

- (위원 수) 총 9인
- (선임 방식) 평가위원회 위원은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,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위원 중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
- (임기) 2년이며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- (위원 위촉 자격)

- ▶ 방송·통신 또는 공정경쟁 관련 학과 5년 이상 경력 조교수 이상
- ▶ 방송·통신 또는 공정경쟁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연구원
- ▶ 5년 이상 경력의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
- ▶ 미디어 사업 관련 단체의 임원 / 기타 방송·통신 또는 공정경쟁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 평가위원 선임 세부방안

㉠ 위원 위촉 분야

- 평가위원회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, 방송, 경제·경영, 법률·회계 및 기타 (융합기술·매체산업 등) 분야로 구분

㉞ 분야 별 위원 수 및 구성방안

- 방송 3인, 경제·경영 2인, 법률·회계 2인, 기타 분야 2인으로 구성

【 분야 별 위원 수 및 구성방안 】

분 야	위원수	구성방안
방 송	3	• 방송 관련 학과 교수, 방송 분야 연구원 등
경제·경영	2	• 경제·경영 관련 학과 교수, 경제·경영 분야 연구원 등
법률·회계	2	• 법률·회계 관련 학과 교수, 법조인·회계사 등
기 타	2	• 융합기술·매체산업 관련 학과 교수, 미디어 사업 관련 단체 임원, 방송·공정경쟁 관련 전문가 등

㉟ 위원 후보 추천

- 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며, 각 상임위원 별 추천 분야와 추천 후보 수 제한은 두지 않음(상임위원 간 상호 추천도 가능)

o 향후 일정

- '12. 3월 중 : 위원 후보 추천 접수
- '12. 4월 초 :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위원회 의결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3. 29(목).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50)